

The Drug and Alcohol Policy

2026.01.01

1. 회사의 약물 및 알코올 방침은 관리선박의 선원 및 방문자 등 본선에 승선한 모든 이에게 적용되며, OCIMF의 '승선 중 알코올 및 마약 남용 방지를 위한 관리 기준' 및 미국의 '마약 남용금지법(U.S. Anti-Drug Abuse Act, 1986)'에서 명시하고 있는 제반 규정을 준수한다.
2. 선상에서 음주를 통제하는 최종적인 책임은 선장에게 있다.
3. 선박에서의 불법적인 약물의 판매나 사용, 소유는 엄격하게 금지된다. 선박에서의 주류에 관한 판매와 소비는 통제되며, 어느 누구라도 회사의 약물과 음주에 관한 규정을 어긴다면 해고 또는 계약 해지될 수 있다. 선장은 본선에 의해 접근이 허가되지 않은 소형선의 접근을 배제하는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선장의 허락없이 선박으로 약물 및 주류가 반입되지 않도록 엄격하게 통제하여야 한다.
4. 전 승조원과 도선사, 그 외 방문자들은 승선해 있는 동안 ;
 - 1) 어떠한 경우라도 혈중 최대 알코올농도 0.03%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 2) 만약, 승조원이 당직 전에 알코올농도 0.00%를 초과할 경우, 당직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3) 모든 승조원은 항시 비상 상황에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
 - 4) 입항 24 시간 전, 항내 정박 중, 또는 미국 영해(12 Nautical Miles)내에서는 음주를 금지한다.
 - 5) 연안 항해 중 또는 선장 판단에 따른 특정 기간은 음주를 금지한다.
 - 6) 당직 중이거나 과업 수행 중에 음주는 허용되지 않는다.
 - 7) 당직 또는 과업 수행 4 시간 전에는 술을 마시거나 취해 있지 않아야 한다.
 - 8) 육상에서 술을 구매하여 선박에 가져오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
5. 선장은 입항 24 시간 전, 항내 정박 중, 또는 미국 영해(12 Nautical Mile)내에서는 승조원이 개별 보유 중인 모든 주류를 회수하여 본드 창고에 보관한다.
6. 선장은 승조원 개별적으로 주류를 제공할 경우, 반드시 빈 주류 용기를 회수하여 개인별로 최대 1 일분 또는 3unit 이상을 보유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7. 선장은 승조원 상륙 후 귀선 시 선내 보유 중인 음주측정기로 음주측정을 시행하여 혈중 최대 알코올농도 0.03%를 초과하지 않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8. 15도를 초과하는 주류(소주 포함)의 선내 음주 및 판매는 절대 허용되지 않는다. 15도 이하의 맥주와 테이블 와인(막걸리 제외)으로만 음주를 제한하며, OCIMF 및 USCG 규정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9. 선상에서의 음주는, 휴게실이나 식당에서만 선장의 승인 하에 공식적으로 허용될 수 있으며, 개인 소지품으로 보관한 주류로 개인 침실에서 마시는 것은 금지한다.
10. 음주 문제(알코올 중독 등)가 있었던 사람은 해상직원으로 채용하지 않는다.
11. 선장이나 기관장이 회사의 약물과 음주에 관한 정책을 어기고 있다고 판단될 경우, 상급 사관은 이러한 사실을 담당감독 또는 DP에게 보고해야 한다.

김 동 준

Chief Executive Officer
POS SM Co., Ltd